

| 대한변호사협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주최 |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

일시 2019년 12월 4일(수), 14:00~16:00

장소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

☐ 일시 : 2019. 12. 4.(수) 14:00 ~ 16:00

☐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시간	프로그램	
14:00 ~ 14:15	개 회	[인사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좌 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15 ~ 14:45	주제발표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45 ~ 15:30	지정토론	이태엽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5:30 ~ 16: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Contents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

주제발표

2019년 전관비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 보고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지정토론

이태엽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	25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31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39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

주제발표

2019년 전관비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 보고

황 지 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9년 전관비리 실태 조사 주요 결과 보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지태 연구위원

PROLOGUE

선행 조사연구 검토 및 본 조사의 방향성

선행 조사연구 검토1

2018년도 법원행정처 조사자료 : 인식조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¹⁾
법원-판사	271	23.2	22.5	54.2
법원-일반직원	292	37.7	31.2	31.2
법조직역 종사자 (1,014)	63	42.9	22.2	34.9
검찰-검사	170	66.5	25.9	7.6
변호사	438	75.8	9.4	14.8
변호사사무원	153	79.1	11.1	9.8
기타	4	0.0	75.0	25.0
일반국민	1,014	41.9	24.2	33.9

※ 자료출처: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법원행정처, p35, p36, 재구성.

1) 해당 응답자의 전체 원문은 이렇하다.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전관변호사나 법조 브로커들이 당사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당사자들을 일부 호도하는 것이다." (Ibid.: 34)

선행 조사연구 검토2

2006년도 노회찬 의원 조사자료 : 전관변호사 구속적부심

	승	패	합계	전관변호사 석방률	지법 평균 석방률
부산	62건	42건	104건	59.6%	53.5%*
창원	33건	20건	53건	62.3%	43.9%
울산	73건	45건	118건	61.9%	54.6%

※ 자료출처: 노회찬, 2006b, "노회찬의원 보도자료: 부산·울산·창원 항판, 변호사로 패돈 벌고 다시 법원으로 복귀하고", 2006년 10월 20일자, p3.

* 부산의 경우, 2005년도 수치를 인용

	승	패	합계	전관변호사 석방률	지법 평균 석방률
광주	68건	51건	119건	57.1%	47.4%

※ 자료출처: 노회찬, 2006c, "노회찬의원 보도자료: 광주·전주·제주 항판, 형사사건 싸늘이하고 다시 법원으로 등장", 2006년 10월 24일자, p2.

선행 조사연구 검토3

2013년도 최한수의 연구결과 : 전관변호사와 형량

사건수입시기	구분	집행유예가능성	형량
퇴직후 1년 이내	고위직 출신	+15% 포인트	-22개월
	평판사(검사)출신	N.S. ¹⁾	N.S.
	고위직이면서 10대로범소속	+18% 포인트	-33개월
퇴직후 1년 이후	전체	N.S.	N.S.

※ 자료출처: http://weekkv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3/2013121301841.html, 위클리비즈니스, 2013년 12월 14일자 (2019년 6월 26일 확인)

* 인용자 주: 이 도표가 실린 잡지에는 출처가 최한수씨 박사학위논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문으로 'Revolving door attorneys and the Power of Connections'가 링크되어 있으나 2019년 6월 현재 원문으로의 링크는 실행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최한수 박사의 박사학위논문(Hansoo Choi, 2014)의 제3장에는 'Revolving door attorneys and the Power of Connections'라는 장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표와 동일한 형태의 도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인용자 주: 원래 기사에서는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없다'는 내용, 즉 Not Significant(N.S.)의 의미일 것이다.

선행 조사연구 검토4

2014년도 이지은,홍석민의 연구결과 : 전관변호사와 유무죄

		유무죄 여부		계
		무죄	유죄	
전관여부 ¹⁾	아니다	7	335	342
		2.00%	98.0%	100%
	그렇다	9	23	32
		28.1%	71.9%	100%
계		16	358	374
		4.3%	95.7%	100%

※ 자료출처: 이지은·홍석민, 2014, "판사와 변호인 간 사회적 자본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형사정책』 제26권 제3호, p146. 표본 및 연구방법론에 관한 내용은 p143-145 참조.

1) 인용자 주: 해당 논문에서 규정하는 전관은 전직 판사를 의미하며, 고위직 판사 여부와 퇴임 시기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임.

선행 조사연구 검토5

2016년도 노회찬 의원 조사자료 : 전관변호사와 집행유예

심급	구분	집행유예 판결 비율
1심	항판 전관 변호사 3인*의 개입 후 1년간 평균	42.85%
	부산·창원지역 법원 2014~2015년	24.40%
2심	항판 전관 변호사 3인*의 개입 후 1년간 평균	27.27%
	부산·창원지역 법원 2014~2015년	10.96%
※ 자료출처: 노회찬, 2016b,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성산) 노회찬 보도자료: 부산·창원지역 및 대구지역 항판 전관변호사 수임사건 판결문 161건 분석결과 공개", 2016년 10월 11일자. p3.		
심급	구분	집행유예 판결 비율
1심	항판 전관 변호사 4인*의 개입 후 1년간 평균	45.2%
	대구지법·산하 지원·대구고법 2014~2015년 평균	31.4%
2심	항판 전관 변호사 4인*의 개입 후 1년간 평균	28.4%
	대구지법·산하 지원·대구고법 2014~2015년 평균	10.6%
※ 자료출처: 노회찬, 2016b,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성산) 노회찬 보도자료: 부산·창원지역 및 대구지역 항판 전관변호사 수임사건 판결문 161건 분석결과 공개", 2016년 10월 11일자. p5.		

전관예우 관련 선행 조사연구들의 특징

- 인식조사는 많지만, 실증조사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 인식조사에서는 현직 판사나 검사들이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
- 실증조사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전관효과를 어느 정도 검증한 연구들은 존재하고, 그 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 실증조사연구의 범위 및 대상과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 실증조사연구는 판사출신 변호사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 있는데, 그 이유는 방법론적 수월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각 실증조사연구에서 전관변호사 규정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본 조사연구에서의 전관예우 정의

- 전관예우는 부적절한 용어로 전관비리라는 용어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오래된 언어 관행을 고려하여 두 가지 용어를 병용한다.
- 본 연구는 법조비리라는 대주제로 출발한 연구이기 때문에, 법조계 분야 이외의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 본 연구에서의 전관예우(전관비리)는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직퇴임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의 과정 또는 결과에서 혜택을 받는 현상’ 정도로 정의한다.
-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위는 좀 더 넓지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판검사출신 변호사에 한정한다.
- 어디까지가 전관변호사인지를 선형적으로 미리 규정하지 않고 조건에 따른 전관효과의 정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념화한다.

본 조사연구의 방향 설정

- 선행 조사연구의 계승과 보완 – 선행 조사연구를 계승하고 참조하면서도, 과거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과 내용을 추가한다.
- 전관예우의 존재 실증을 위한 전략 구상 – 1. 의뢰인들의 전관 선호 현상 증명, 2. 전관변호사의 수임건수 및 수임료 과다 증명, 3. 실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특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증명. (본 연구는 주로 1. 2.를 통해 향후 3.에 대한 연구를 추동하고자 함)
- 전관변호사의 조건에 따른 전관효과의 변화 연구 – 전관변호사의 퇴임 전 직위와 퇴임 이후 기간의 조합에 따른 여러 가지 분석 실시

PART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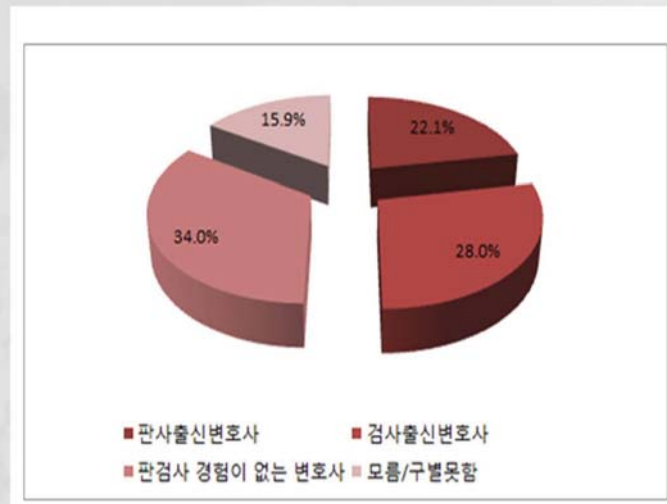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실태조사

의뢰인 대상 조사방법

온라인 패널 조사 : 변호사 선임 경험자들만 추출

구분	내용
모집단	· 국내 변호사 선임 경험 성인 남녀 (국선변호사 제외)
표집틀	· Access Panel
표집방법	· 임의추출 방법
표본크기	· 700명
표본오차(95%신뢰수준)	· $\pm 3.7\%$
조사방법	· 온라인 패널 조사
조사일시	· 2019.9.11 ~ 2019.9.27

의뢰인들이 선임한 변호사들의 전직



의뢰인들의 전관변호사 선호

2018년 변호사 모집단 및 2018-2019년 조사 비교

단위: 명(%)

구분	2019년 본(전관예우) 조사	2018년 법조브로커 조사 ¹⁾	2018년 기준 변호사 모집단 분포
판사출신 변호사	155 (22.1)	64 (20.6)	1,679 ²⁾ (8.2)
검사출신 변호사	196 (28.0)	83 (26.7)	1,403 ³⁾ (6.8)
기타 변호사	238 (34.0)	93 (29.9)	17,472 ⁴⁾ (85.0)
모름, 구별 못함	111 (15.9)	70 (22.5)	
계	700 (100.0)	310 (100.0)	20,554 (100.0)

1) 황지택·김정연·정지혜·강우예, 2018,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I):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1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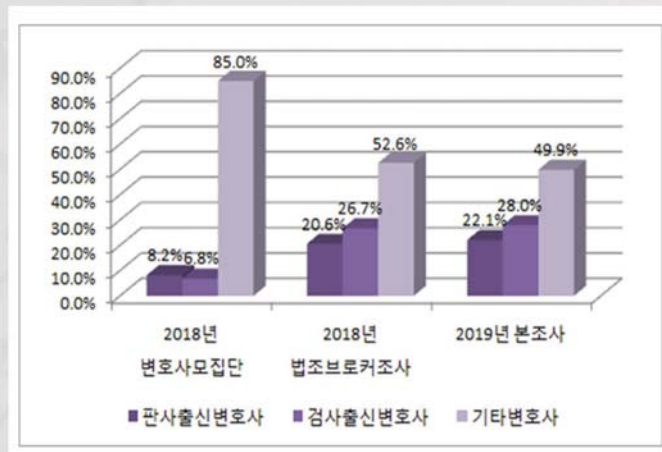
2) 2018년도 9월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개업을 한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 청렴사회인관행의회 총괄분과위원회, 2018,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안」: p1. 참조.

3) 2018년도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개업 회원 등록 변호사 총수(전체 25,250명 중 휴업 또는 미개업자 4,696명 제외, 2018년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황지택·김정연·정지혜·강우예, 2018,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I):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99. 참조.

4) 두 자료를 조합한 계산식으로 산출, 19,472명=20,554명-(1,679명+1,403명)

의뢰인들의 전관변호사 선호

그래프 재구성



변호사 모집단 분포와 두 조사 결과의 차이 검증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모집단과의 편차

단위: 명(%)

구분	A. 2019년 본(전관예우) 조사	B. 2018년 법조브로커 조사	C. 2018년 기준 변호사 모집단 분포
판·검사출신 변호사	351 (50.1)	147 (47.4)	3,082 (15.0)
기타 변호사 (모름 포함)	349 (49.9)	163 (52.6)	17,472 (85.0)
계	700 (100.0)	310 (100.0)	20,554 (100.0)

※ AB 조합 도표의 Pearson Chi-Square Value(χ^2) = 0.638, df=1, N.S. (Sig. 2-sided=0.425)
 ※ AC 조합 도표의 Pearson Chi-Square Value(χ^2) = 6.175E2, df=1, p(0.000)
 ※ BC 조합 도표의 Pearson Chi-Square Value(χ^2) = 2.455E2, df=1, p(0.000)

의뢰인이 선임한 전관변호사의 조건

퇴임 후 선임까지의 기간 및 퇴임 시 직위

퇴직 후 선임까지 걸린 기간	변호사 구별		
	판사출신 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계
1년 미만	30 (19.4)	20 (10.2)	50 (14.2)
1년 이상 2년 미만	52 (33.5)	54 (27.6)	106 (30.2)
2년 이상 3년 미만	24 (15.5)	41 (20.9)	65 (18.5)
3년 이상 5년 미만	20 (12.9)	28 (14.3)	48 (13.7)
5년 이상	21 (13.5)	32 (16.3)	53 (15.1)
모름	8 (5.2)	21 (10.7)	29 (8.3)
계	155 (100.0)	196 (100.0)	351 (100.0)

$\chi^2=11.295$ (df=5), $p<0.05$

퇴직 당시 직위	변호사 구별		
	판사출신 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계
법판사, 행정판사	25 (16.1)	43 (21.9)	68 (19.4)
부장판사, 부장검사	98 (63.2)	118 (60.2)	216 (61.5)
감사장, 법원장	16 (10.3)	14 (7.1)	30 (8.5)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또는 그 이상	4 (2.6)	3 (1.5)	7 (2.0)
모름	12 (7.7)	18 (9.2)	30 (8.5)
계	155 (100.0)	196 (100.0)	351 (100.0)

$\chi^2=3.349$ (df=4), N.S.

판검사출신변호사들의 평균 수입료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의 평균 기본수임료 비교

단위: 만원, 명

구분	평균(만원)	사례수(명)	표준편차	t검정 ¹⁾	ANOVA ²⁾
판사출신 변호사	935.68	155	807.739	t=0.243 df=349	F=18.792 df1=3 df2=696 p<0.000
검사출신 변호사	914.68	196	801.007	N.S.	
기타 변호사 (판검사출신 외)	527.08	238	590.531	t=0.245 df=347	
모름/구별없음	510.21	111	618.357	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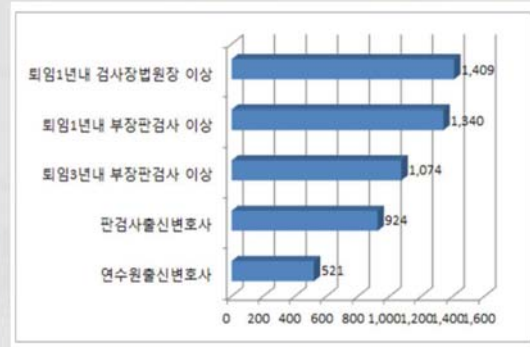
1) t검정 결과, 판사출신 변호사와 검사출신 변호사의 수입료 차이는 없고, 기타 변호사와 미상의 경우에도 수입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ANOVA 검정 결과, 네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단, 판사출신과 검사출신 사이의 차이가 없고, 기타 변호사와 미상 사이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나머지 집단(기타 변호사 및 미상)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N.S. : Not Significant

전관변호사들의 조건에 따른 기본수임료

단위: 만원 명

구분	평균(만원)	사례수(명)	표준편차
기타 변호사 (연수원 출신/미상)	521.71	349	598.681
판검사출신 변호사 전체	923.95	351	802.903
퇴임 3년 이내 무장판검사 이상	1,074.17	167	905.035
퇴임 1년 이내 무장판검사 이상	1,340.00	37	1240.679
퇴임 1년 이내 검사장 법원장 이상	1,409.09	11	1362.685

도표



그래프

판검사출신변호사들의 평균 추가비용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의 평균 추가비용 비교

단위: 만원 명

구분	평균(만원)	사례수(명)	표준편차	t검증 ¹⁾	ANOVA ²⁾
판사출신 변호사	286.97	33	276.648	t=-1.194 df=72 N.S.	F=1.727 df1=3 df2=79 N.S.
검사출신 변호사	374.39	41	339.507		
기타 변호사 (판검사출신 외)	142.50	6	96.112	t=0.402 df=7 N.S.	
모름/구별못함	116.67	3	76.376		

1) t검증 결과, 판사출신 변호사와 검사출신 변호사의 차이는 없고, 기타 변호사와 미상의 경우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ANOVA 검증 결과, 네 집단 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음. 이는 기타 변호사들 각각의 사례수가 너무 적어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전관변호사들의 총수임료

총수임료(의뢰인총비용)=기본수임료+추가비용

전관 여부	사례수	평균(만원)	표준편차	중간값 (50%)	1사분위 (25%)	3사분위 (75%)
연수원출신 변호사 혹은 미상	349	525.17	599.521	400	200	500
판검사 출신 변호사	351	994.66	852.338	700	500	1300

퇴직 시 직위	퇴임 기간	사례수	평균(만원)	표준편차	중간값 (50%)	1사분위 (25%)	3사분위 (75%)
부장 판검사 이상	3년 이내	167	1191.36	964.259	900	500	1800
	1년 이내	37	1495.41	1271.265	1200	515	2000
검사장 법원장 이상	3년 이내	24	1177.08	1153.443	800	300	1875
	1년 이내	11	1563.64	1335.120	1500	500	2000

퇴직시직위/사건종류/퇴직기간에 따른 총수임료

총수임료(의뢰인총비용)=기본수임료+추가비용

퇴직 시 직위	사건 종류	퇴직 기간	사례수	평균 (만원)	표준편차	중간값 (50%)	1사분위 (25%)	3사분위 (75%)
부장 판검사 이상	형사 사건 포함	3년 이내	81	1385.65	1027.204	1000	600	2000
		1년 이내	24	1634.58	1214.517	1450	725	2000
	민사/ 행정 사건	3년 이내	86	1008.36	867.697	599.5	500	1500
		1년 이내	13	1238.46	1382.35	500	250	2000
검사장 법원장 이상	형사 사건 포함	3년 이내	9	1438.89	686.375	1500	800	2000
		1년 이내	6	1550.00	441.588	1500	1325	2000
	민사/ 행정 사건	3년 이내	15	1020.00	1358.676	400	200	1000
		1년 이내	5	1580.00	2052.31	500	200	3500

의뢰인 대상 조사결과 종합

- 의뢰인 대상 조사를 수임건수와 수임료 차원에 한정하여 종합해 보면, 전관변호사들은 기타 변호사들에 비해 평균적인 수준에서
- 수임건수가 많고,
- 기본 수임료가 비싸며,
- 추가수입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위 세 가지를 결합하면, 전관출신변호사들과 기타 변호사들 사이의 평균 수입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전관효과는 퇴임시 직위 및 퇴임 기간과 상관이 있고, 퇴임 기간이 길어지면 전관효과가 약화되기는 하나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단, 본 조사는 조사의 특성상 거물급 전관변호사의 누락 소지가 높다.

PART2.

현직 변호사 대상 실태 및 인식조사

변호사 대상 조사방법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개인 또는 법인 소속 변호사
표집틀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표집방법	·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기준 지역별, 소속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500명
표본오차(95%신뢰수준)	· $\pm 4.4\%$
조사방법	· 면접조사 (온라인, 팩스 조사 병행)
조사일시	· 2019.9.11 ~ 2019.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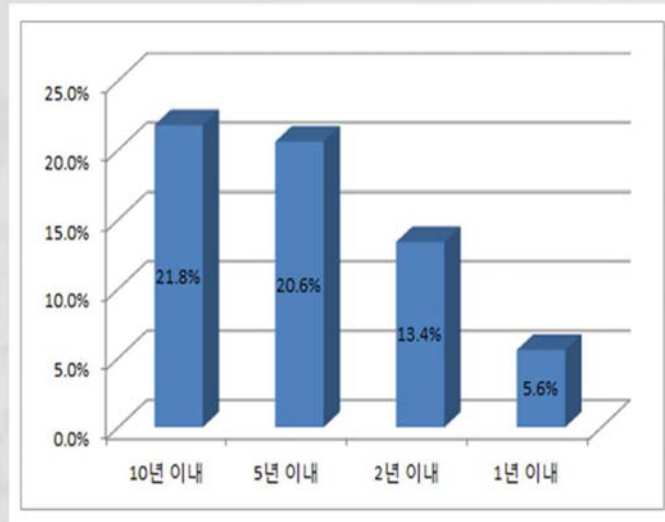
판검사직 경험 변호사 비중

변호사 모집단에서의 비율보다 낮게 나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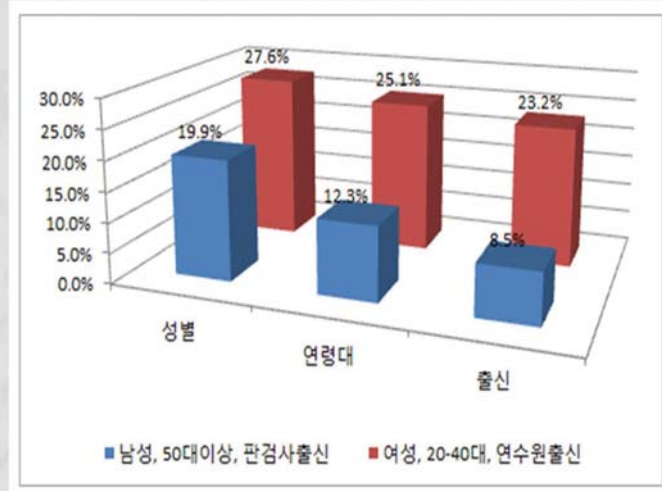
판·검사직 경험 유무	성별		계
	남성	여성	
판사직 경험 있음	25 (6.6)	0 (0.0)	25 (5.0)
검사직 경험 있음	22 (5.8)	0 (0.0)	22 (4.4)
해당 없음	330 (87.5)	123 (100.0)	453 (90.6)
계	377 (100.0)	123 (100.0)	500 (100.0)

설문응답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경험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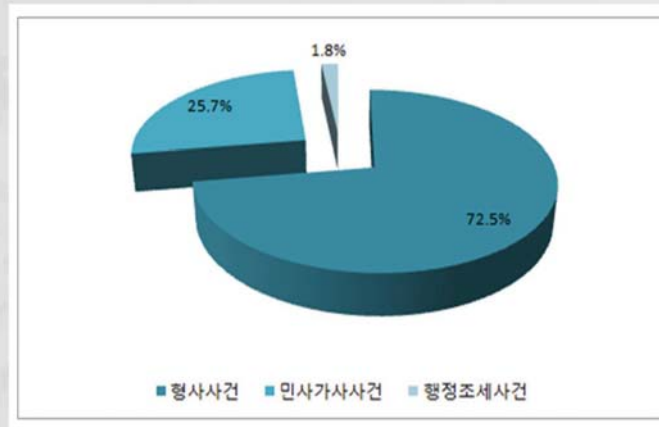
성별, 연령대별, 출신별 전관예우 경험률

여성, 20-40대, 연수원출신 변호사의 경험률이 높음



변호사들이 경험한 전관예우 사건의 종류

가장 최근에 경험한 전관예우 소송 유형



사건 유형에 따른 전관예우 혜택 단계

형사사건에서는 1심 재판 전 단계가 65.8%

단위: 명(%)

전관예우 혜택 단계	사건 유형 재분류		
	형사사건	민사/행정사건	계
경찰 수사단계	3 (3.8)	-	3 (2.8)
검찰 수사단계	41 (51.9)	4 (13.3)	45 (41.3)
구속 관련 재판	8 (10.1)	-	8 (7.3)
1,2심 재판	24 (30.4)	24 (80.0)	48 (44.0)
대법원 재판	3 (3.8)	2 (3.6)	5 (4.6)
계	79 (100.0)	28 (100.0)	109 (100.0)

$\chi^2=24.557$ (df=4), $p<.001$

선임계 미제출, 전화변론, 추가 로비비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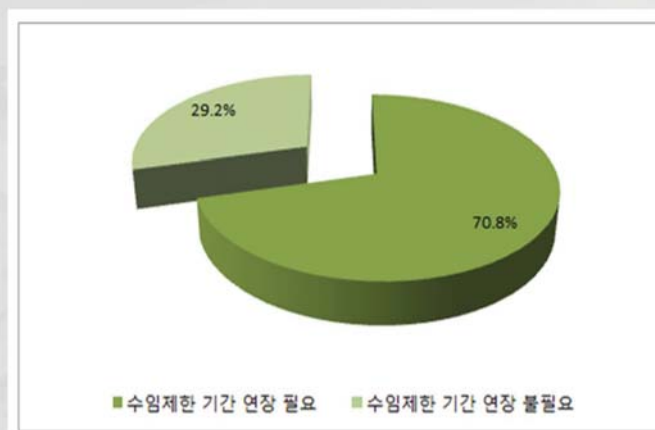
선임계 미제출 사례 경험	변호사 출신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 변호사	계
경험	-	21 (4.6)	21 (4.2)
미경험	47 (100.0)	432 (95.4)	479 (95.8)
계	47 (100.0)	453 (100.0)	500 (100.0)

전화변론 사례 경험	변호사 출신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 변호사	계
경험	-	22 (4.9)	22 (4.4)
미경험	47 (100.0)	431 (95.1)	478 (95.6)
계	47 (100.0)	453 (100.0)	500 (100.0)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 경험	변호사 출신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 변호사	계
경험	-	15 (3.3)	15 (3.0)
미경험	47 (100.0)	438 (96.7)	485 (97.0)
계	47 (100.0)	453 (100.0)	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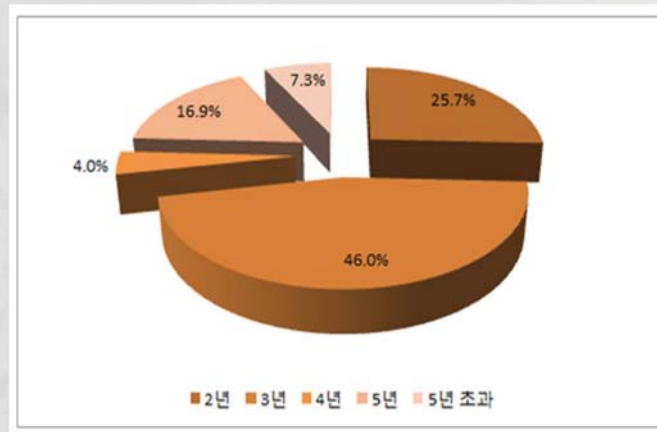
수임제한 기간 연장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

현행 변호사법의 특정 전관변호사 수임제한 1년 규정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적정한 수임제한 기간에 대한 의견

3년 46.0%, 2년 25.7% 등



여러 가지 전관예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더 필요하다는 의견임

단위: %

규제 유형	전관예우 방지와 관련한 규제 법률 제·개정 필요 여부					평균점수*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대체로 불필요	매우 불필요	계	
1.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의 확대	137 (27.4)	310 (62.0)	51 (10.2)	2 (0.4)	500 (100.0)	1.836
2. 수임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150 (30.0)	306 (61.2)	41 (8.2)	3 (0.6)	500 (100.0)	1.794
3. 재판부와 소송대리인 연고 관계 진술 의무 도입	122 (24.4)	259 (51.8)	117 (23.4)	2 (0.4)	500 (100.0)	1.998
4.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확대(수임료 등) 공개	131 (26.2)	273 (54.6)	92 (18.4)	4 (0.8)	500 (100.0)	1.938
5. 선임계 미제출 변론, 전회 변론 등 편법 강령 규제	192 (38.4)	280 (56.0)	27 (5.4)	1 (0.2)	500 (100.0)	1.674
6. 퇴직 전 판검사의 고위직 여부에 따른 차등적 규제	112 (22.4)	334 (66.8)	53 (10.6)	1 (0.2)	500 (100.0)	1.886
7. 퇴직 전 근무장소와 관련된 개업지의 장소적(개업지) 제한	131 (26.2)	303 (60.6)	64 (12.8)	2 (0.4)	500 (100.0)	1.874
8. 법조계 이외 영역의 고위공직사 대형로범 취업규제	155 (31.0)	300 (60.0)	44 (8.8)	1 (0.2)	500 (100.0)	1.782

※ '매우 필요' 1점, '매우 불필요' 4점으로 계산한 값

변호사-의뢰인 응답결과 비교1

전관예우 관행의 만연에 대한 인식 차이

단위: 명(%)

현재 전관예우 현상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집단 차이	
	변호사	의뢰인
매우 많다	66 (13.2)	397 (56.7)
약간 있다	323 (64.6)	269 (38.4)
별로 없다	104 (20.8)	31 (4.4)
전혀 없다	7 (1.4)	3 (0.4)
계	500 (100.0)	700 (100.0)

$\chi^2=256.422$ (df=3), $p<.001$

변호사-의뢰인 응답결과 비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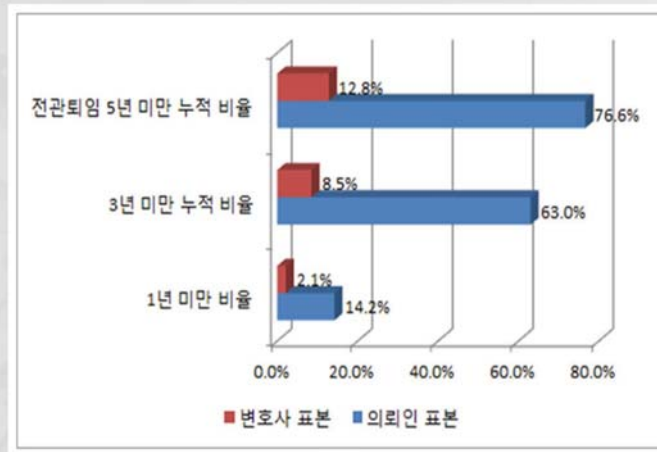
전관변호사 선임의 유리함에 대한 인식 차이

단위: 명(%)

전관변호사 선임이 소송에서 유리한지에 대한 생각	집단 차이	
	변호사	의뢰인
매우 유리	49 (9.8)	311 (44.4)
약간 유리	299 (59.8)	319 (45.6)
별 차이 없음	150 (30.0)	57 (8.1)
약간 불리	2 (0.4)	10 (1.4)
매우 불리	0 (0.0)	3 (0.4)
계	500 (100.0)	700 (100.0)

$\chi^2=214.054$ (df=4), $p<.001$

변호사조사와 의뢰인조사에서의 전관변호사 퇴임 기간 비교



변호사 대상 조사결과 종합

- 변호사 시장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여성 변호사, 젊은 변호사, 비전관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변호사들의 불만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 의뢰인조사와 변호사조사를 비교했을 때, 의뢰인들은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더 많이 선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같은 판검사출신 변호사들 중에서도 퇴임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전관변호사를 실제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선임하고 있다는 근거가 포착된다.
- 변호사조사의 따르면, 형사사건에서의 전관예우 관행과 검사출신 전관변호사의 질적 양적 비중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관예우에 대한 논의는 법원과 관련된 것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 현직 변호사들은 전관변호사들의 선임계 미제출과 전화변론 등 편법 변론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가장 크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T3.

선행연구, 의뢰인조사, 변호사조사 종합 및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

본 조사와 선행 조사연구의 종합

- 선행 실증조사연구의 양은 많지 않지만, 수사나 재판단계에서의 전관효과를 어느 정도 입증하는 조사연구들은 존재하고, 그 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결합하면, 1. 의뢰인들의 전관 선호 현상 증명, 2. 전관변호사의 수입건수 및 수입료 과다 증명, 3. 실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특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명 절차가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추게 된다.
- 요약하자면, 1. 의뢰인들이 전관변호사를 선호하는 현상은 뚜렷하다. 2. 그러한 선호로 인해 전관변호사(특히 퇴임 3년 이내의 전관변호사)의 수입건수가 평균보다 많고 수입료도 평균보다 높으며, 기타 부수입까지 고려하면 전관변호사의 수입은 기타 변호사들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3. 그리고 이러한 수입의 차이는 수사나 재판단계에서의 실제 전관효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만하다.
- 다만, 변호사들과 비교한 의뢰인들의 인식 경향 등을 볼 때, 어떤 소송에서는 실제 전관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전관변호사를 선호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할 개연성도 작지 않다. 결국, 전관변호사와 기타 변호사들 간의 수입 차이는 실제 전관효과와 이 같은 후광효과의 결합에 의해 나타난다고 판단한다.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

-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적극적 제도 개선 노력의 필요** - 전관예우가 좀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영역은 형사소송 영역 및 검사들의 활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관비리 근절대책은 주로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 왔는데, 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청되는 상황이라 할만하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등의 전관변호사 효과에 대한 양적 검증 등 주기적 점검 제언** - 적지 않은 판검사들이 주장하듯 전관효과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전관효과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의뢰인들에게 전관효과에 속지 말라고 홍보라도 해야 한다. 양형위원회나 대검찰청 통계부서에서는 변호사 관련 변수만 추가하면, 전관효과에 대한 전수 조사 검증도 가능한데, 다만 시도하지조차 않을 뿐이다. 전관효과를 수치로 보여주고, 또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수치로 그 감소를 확인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전관비리 방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
- 선임계 미제출, 전화변론 등 전관변호사들의 편법 변론에 대한 입법 문제** - 선임계 미제출이나 전화변론 등은 다수의 변호사들이 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사안이나, 실제로 이를 실효성 있게 단속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단속이 어렵다 하더라도 가령 다른 불법 사건 수사과정에서 여죄로 발견될 경우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하여 일반적 예방효과를 높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한다.
- 그 외 나머지 정책 제언** - 기존에 제안된 여러 법률안들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

지정토론 1

이 태 업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이 태 업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

발표자이신 황지태 연구위원님의 전관예우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제안은 법조 종사자와 일반 의뢰인들에 대한 인식조사, 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제안까지 포함된 실증적 연구란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보충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관예우 현상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인식 조사

전관예우, 전관특혜(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TF), 전관비리(발표자의 발표문 제목)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우리 법조 내 전관 변호사를 둘러싼 여러 부조리 현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관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들보다 재판 및 수사 절차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법조 종사자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현직 판사나 검사들이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정하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실무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수행하는 변론 활동 능력은 전관예우로 볼 수 없다거나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전관변호사나 법조 브로커들이 당사자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¹⁾ 그러나 전관 변호사만이 법원과 검찰 내 절차 진행과 관련한 특정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다면(예를 들면, 최근 전관 변호사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다량 유출 사건,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된 법원 내 판결정보의 확인) 오히려 이러한 것이 전관예우 부조리의 한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과 검찰의 재판 및 수사 절차가 투명하지 못해 전관 변호사 혹은 그 관계자들이 전관임을 내세워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또한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조사한 문항 중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전관변호사나 법조 브로커들이 당사자들을 호도하는 것이다”라는 문항이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류되어 조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실태조사

전관 고위직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임료를 과다하게 지출하게 되는 경우, 이를 태면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전화 변론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받고 사건 변호를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사건의 의뢰인은 우리 사법절차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즉, 사법정의에 의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다는 자신의 금력으로 선처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 계속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 변론의 상대방은 검찰 고위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탁을 받은 고위직 검사는 주임검사에게 그러한 부탁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전관 변호사의 경우와 같이 탈세의 유혹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전관 고위직 변호사에 대한 과다 수임료는 이와 같은 총체적인 부조리를 야기하게 되어, 전관 고위직 변호사에 대한 과다 수임료, 전화변론 등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2년 내 수임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수임료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국세청의 세무자료도 조회하여 검토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현직 변호사 대상 실태 및 인식 조사

현직 변호사들이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분야 중 압도적인 분야는 형사 수사 단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들이 느끼는 곤란은 재판 단계와 달리 정해진 기일이 있지도 않고 수사 담당자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폐쇄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에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수사기관은 변호사들이 수사 단계에서 변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전관 특혜라고도 할 수 있는 검찰 고위직 전관 변호사에 의한 검찰 고위직에 대한 직접 변호는 매우 제한되거나 적어도 그 내용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검찰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전관예우 방안

발표자께서 전관예우 규제를 위해 제시하여 주신 방안 모두 우리 법조 내에서 전관예우를 줄이기 위해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선임계 미제출 변론의 경우에는 법무

부와 검찰이 소속 직원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실효적인 통제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판사와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이 규정되어 있는데,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와 검사는 퇴직 후 변호사로서 과거에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일반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준을 수임제한 기준과 연동하여 그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

지정토론 2

김 혜 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김 혜 경 계명대학교 교수·법학박사

1. 들어가며

2019년 11월 8일 청와대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에 의한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를 척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협, 검찰, 학계 등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TF’를 구성하여 내년 2월까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신속하고 확실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예고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입하고 전관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처리절차에서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안을 논의·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 점검, 본인 사건 취급제한 및 몰래 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변호사법 위반행위 징계 강화 등의 방침이 후속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늘 비판하여 왔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처럼 변호사선임에 있어서도, 전관변호사는 일반 변호사보다 매우 높은 수임료로 인하여 변호인선임상의 빈익빈 부익부를 창출한다는 의혹을 받곤 하여왔다. 수임료가 높은 전관변호사일수록 전관의 인연을 수단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도출하여 왔다는 의혹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다를바 없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아 온 것이다. 즉, 전관예우란 전관을 수임할 만한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는 불신의 다른 이름이나 마찬가지로 전락하였다.

그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조사 또는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향후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서도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주로 문헌연구 중심의 법학적 태도와 다른 조사연구의 결과는 예상가능하면서도, 그 예측의 실증적·경험적 토대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는 발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수반되거나 논의될 여지가 있는 사안들에 관하여 부연하고자 한다.

2. 전관예우라는 용어의 타당성

전관예우는 문언대로는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이다. 전관(前官)이란 공직에 있었던 자를, 예우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우대, 존경의 표시를 의미한다. 원래는 ‘장관급 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에게 퇴관(退官) 이후에도 재임 당시의 예우를 베푸는 일’을 의미하며, 의전이나 호칭상 재임 당시의 관직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²⁾ 이러한 예우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조선총독부관료들을 중심으로 일본이 하사한 관직에서 물러난 자들에 대하여 재직과 동등한 대우를 하면서 유래되었다. 한마디로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셈이다.

또한 전관예우가 그와 같은 유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역은 전관예우의 본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통상 전관예우라 하면, ‘전직 판사 또는 검사 등 법조계에 있던 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전업한 경우, 법조출신변호사에게 개업하여 처음 얼마동안에 맡은 사건이나 소송에 대해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해주거나 보다 넓게는 개업이후에도 기간과 관계없이 인맥에 의하여 전관변호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특혜가 공정한 것이 아닌 부당하거나 나아가 재판의 공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불법한 특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관예우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관하여 발표에서는 전관비리라는 용어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타당한 비판 또는 지적이다.

다만, 용어가 함의하는 바가 그와 같은 현상의 범위 또는 주체 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비리와 비위도 의미상 차이가 있다. ‘비리’는 옳지 않은 일을 뜻하는 말이고, 따라서 비리가 지칭하는 영역은 선하지 않은 행위이다. 한편 ‘비위’라는 용어는 법에 어긋나는 일을 지칭한다.

그러나 공직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비위보다는 비리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컨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비위공무원이 아닌 비리공무원이라고 통칭한다. 그러나 뇌물죄는 범죄이므로 비위공무원이 보다 적합한 용어이다.

그렇다면 전관비리인가 전관비위인가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2011년 5월 변호사법 개정으로 소위 ‘전관예우금지법’에 따라 퇴임하는 판사 또는 검사가 퇴임직후 직전의 근무지에서 변호사로서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신설하였고, 2016년에는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여 전관수임제한 해제광고를 금지하였다. 이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관련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면 이는 비리를 넘어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여 진다.

물론 전관비위보다 더 적합한 용어가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여기에서 언급하는 바는 전관예우

2) 유재복 판사, “전관예우에 대하여”, 법률신문, 2007/3/26일자 법조광장 사설 중.

라는 용어의 부적절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체되는 용어의 선택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2. 조사의 본질적인 지향점 또는 조사방법

본 조사는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실증적 연구가 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수사나 재판단계에서의 전관효과를 어느 정도 입증하는 조사연구들은 존재하지만, 그 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는 본 조사가 그 역, 즉 전관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또는 전관의 유무에 대한 중립적 태도로 출발하거나 분석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실제 전관효과로부터 비롯된 유리한 결과라고 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기존의 선행 실증조사연구와의 차별화를 보다 세밀히 분석하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다만 의뢰인들의 인식 경향으로 보아, 실제 전관효과가 없는 경우라도 전관이라는 후광효과에 의하여 전관변호사를 선호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할 개연성도 작지 않다는 결론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설문조사 분석의 결과인지 아니면 간접적인 추론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발표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전관효과가 있든 없는 의뢰인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전관효과가 실제로 있는 영역에서는 높은 선호도가 보다 높은 수임료로 이어지고 전관효과가 없는 영역에서도 전관에의 기대치가 후광효과를 발휘하여 보다 높은 수임료로 이어진다고 이해되는데, 이러한 해석이 발표내용에 부합한 것인지.... 그렇다면 실제 판결결과와 무관하게 전관효과 유무와 관계없이 어느 영역이든 전관변호사의 수임료는 높은 것이고, 전관이라는 경력이 수임료를 높이는 원인이라면 그것이 척결해야 할 비리 또는 비위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경력의 차별화 및 성공비율 등이 변호사업제라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책정의 주요한 원인이라면 그것 자체가 비리이거나 비위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즉, 척결되어야 할 비리가 전관이라는 경력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고 우리사회의 ‘정의’ 또는 ‘공정’에 반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후광효과는 그것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점에서 부연 설명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보다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설명을 추가한다면, 변호사 시장은 2000년대 초 중반 이후로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전관이라고 부를 만한 직위, 즉 부장판사 이상의 경력이 있는 판사 또는 검사들은 법조 경력 최소 15-18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변호사시장 확대 이전 또는 그 즈음부터 입직하여 활동하였고, 그 즈음은 아직 변호사의 수가 급증하기 전이어서 대체로 수임료가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최근 활발히 확대되고 있는 변호사시장의 평

균적인 수입료는 그 당시와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조사에서 만일 15-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군과 그와 대등한 정도의 전관 경력이 있는 전관변호사군의 수입료를 비교하였더라도 수입료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결과도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적인 질문을 하고자 한다.

3. 전관의 유형에 따른 차이 여부

사건 유형에 따른 전관예우 혜택 관계에서 형사사건에서는 1심 전 단계가 65.8%로 매우 높았으며, 특히 검찰의 수사단계에서의 비율은 51.9%에 이르러 절반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1,2심 재판을 포함하면 형사사건이든 민사/행정 사건이든 대략 80% 정도에 이르게 된다.

그 통계와 관련하여 우선, 사건 유형에 따른 전관예우 혜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발표를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총 건수가 109건이고, 그에 앞선 통계 중에서 전관변호사들 중 퇴직시 직위가 부장판검사 이상, 검사장 법원장 이상의 사례수를 총합하면 239건이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변호사들이 경험한 전관예우 사건들은 500명을 대상으로 한 각각의 비율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사건 유형에 따른 전관예우 혜택이라는 부분이 실제 전관예우의 결과가 확인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험에 의한 전관예우인지... 앞의 변호사들이 경험한 전관예우 사건의 유형별 비율을 보면 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가 매우 중요하고, 경찰단계에서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면 1심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계속되므로 통계와 같은 결과는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단계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실무경험이 없으므로 아마도 사고의 오류가 있을 법도 하다. 다만 그와 같은 결과에 있어서 검사출신 변호사와 판사출신 변호사가 사건 유형별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매우 궁금한 부분이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 또는 구속영장 신청여부는 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판사출신과 검사출신이 형사사건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차이가 혹시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추가해 주셨으면 한다.

4. 설문결과와 정책제언과의 관련성

전관이라는 인적 특수성이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면, 그 재판의 불공정성은 당사자인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 등 재판에 자의에 의해서든 강제적으로든

관여해야 하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전관예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우리 사회의 공정하지 못한 악폐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첫째, 정책제언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전관변호사의 선임영역을 어느 만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가 조사로부터 드러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수입금지 지역과 제한연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맥이나 기타의 사정을 개입시키는 경우에 전관변호사의 선임을 제한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 분석과 이를 통한 정책이 제안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것이 반대로 전관변호사의 직업선택 또는 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법리적 논거로서 실증분석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을 듯하다. 예컨대, 전관과 어느 한 지점이라도 공통부분이 생기는 경우라면 기간에 제한없이 변호사업에 종사하는 전 기간에 수입을 금지하여야 하는 것인지, 퇴임 후 일정기간 동안의 제한으로 족한 것인지도 문제될 것이다.

둘째, 의뢰인들에 대한 전관의 후광효과에 대한 경계 또는 계도는 전관예우의 폐악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정책 제언 중에서 두 번째의 경우, 변호사 관련 변수의 추가의 소관은 양형위원회는 아닌 듯하다. 양형위원회는 재판결과인 판결문의 분석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개입하는 국가기관, 또는 그와 관련하여 소관업무를 배정하는 기관에 전관여부에 대한 검토의무를 부과함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셋째, 선임계 미제출, 전화변론 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통계상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다는 답변만 전관변호사들에게 있을 뿐이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일반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조차도 현실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다소 회의적이기는 하다. 가장 법조문 해석과 적용에 뛰어난 법조인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처벌규정을 둔다고 하여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으로, 조사를 토대로 한 보다 구체적인 제언사항이 있다면 부연설명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관변호사가 자신이 공직 중 처리했던 사건의 당사자인 기업에 입사하는 경우도 제재 또는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입사가 재직 중 사건처리에 대한 특혜나 뇌물성이 있는 경우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와 같은 혐의가 있는 사안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전관예우의 의미나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안이므로 법적 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본 조사결과와의 연관성을 찾아내서 제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연설명이 있으면 한다.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

지정토론 3

최 유 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최 유 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은 지난 4월 30일에 개최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에 이어, 우리 근대 사법사(司法史)의 깊은 병폐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오늘 마련된 심포지엄은 전체 변호사수임 사건 대비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현황과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조사, 입증, 분석하는 학계의 노력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뜻깊다 할 것입니다. 전관예우의 원인과 현상, 근절방안과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수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지만,¹⁾ 이 같은 경험 연구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이러한 실증적 연구의 수행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님과 귀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님, 누구보다 『2019년 전관비리 실태조사』수행하신 황지태 연구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1. 황지태, 『2019 전관비리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황지태 박사님은 2018년 초 발간된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머리말에서 “*법조 브로커와 전관예우에 문제 해법에 대해 다년에 걸쳐 모색해 보고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본 연구는 시작일 뿐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독자이자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J.S.D.)

1) 전관예우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한인섭, “법조비리와 법률가 윤리”, 『법과 사회』 제29권(2005), 9-19면; 한상희, “전관예우방지법”, 『의정연구』 제17권 제3호(통권 제34호(2011)), 217-224면; 한상희, “헌법문제로서의 전관예우 방지-공직 권력의 사유화와 그 헌법문제”, 『헌법학연구』 제17권 제4호(2011), 91-134면; 송기춘,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제한에 관한 법적 논의”, 『헌법학연구』 제17권 제3호(2011), 209-240면; 신평, “전관예우의 근절책”, 『법학논고』 제4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2013), 1-28면; 하태훈, “사법에 대한 신뢰”,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2013), 575-592면; 송인호, “전관예우 해결 방안-입법적 고찰”,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2013), 413-437면; 서보학, “법조비리 근절방안 모색-전관예우 방지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51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2016), 233-260면; 이국운, “한국 사회에서 법조계 전관예우의 원인과 대책”, 『서울法學』 제25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2017), 1-39면; 이울,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록 및 개업 제한 방안-법원, 검찰 최고위직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필요성 및 방법에 관하여”, 『인권과 정의』 제471호(2018), 111-120면; 김연, “사법비리 근절을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2018), 235-266면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자로서 이 같은 비장한 각오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하고 특히 ‘전관예우’ 실태 조사는 더욱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주로 인식조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방법론을 동원하여 설계하고자 했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전관예우’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선행연구들마저 다소 상이한 정의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서도 ‘전관예우’라는 법사회학적 현상을 → (궁극적으로) ‘전관비리’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법조 영역에서의 전관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 전관예우를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직퇴임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의 과정 또는 결과에서 혜택을 받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은 연구의 시간적·경제적 한계를 감안할 때 (초기 연구로서) 적절한 범위 선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S.9). 이 연구는 ‘前官’을 [아직까지는] 공직퇴임 변호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로 한정하면서도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언제까지 전관으로서의 영향력이 사건 수임과 절차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유연한 방식으로도 관찰하고 측정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S.9). 요컨대 이 연구의 특징은 ① (역설적으로) ‘의뢰인’들의 관점에서 전관 선호 현상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 ② (법률 시장에서 전관예우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반증할 수 있는) 전관변호사의 사건 수임 건수와 수임료 과다 현상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③ 실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전관 변호사에 대한 특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S.10)고 이해됩니다.

☞ 이 같은 사전적인 연구의 설계는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며, 연구 수행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실현(또는 측정) 가능한 범위에서 불가피한 설정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전관예우에 대한 측정이 다각도에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최근 10년 ~ 15년 간 우리 법률시장에서 전관이 ‘판검사’에 한정되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물론 일반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경우까지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구자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연구 설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 의뢰인 대상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발표자께서는 의뢰인 대상 조사를 각각 수임 건수와 수임료에 한정하여 전관 변호사가 기타 변호사(非전관변호사로 임함)에 비하여 사건 수임 건수가 높고, 기본 수임료가 평균 387.6 (만원)에서 426.6(만원) 가량 비싸며, 검사 출신의 경우 보다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의 경우 기본 수임료가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하셨습니다. 또한 추가수임을 얻는 경우가 존재하며, 전관의 효과는 퇴임 시 직위가 각각 법원장/검사장 이상인 경우와 부장판검사 이상인지 여부와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있고, 퇴임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가 3년 이내인 경우보다 각각 평균 304.05만원(부장판검사 이상)과 386.56만원(검사장, 법원장급 이상)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직관적으로 누구나 공감해 왔던 현상을 ‘실증적인 측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치’로 입증해 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법률 시장에도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고 보면, (변호사의) ‘경력’이 많고 적음, 또는 ‘승소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법률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문제로 지적하는 전관예우(비리) 현상은 단순히 前官이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실질적인 법률대리의 내용, 법률서비스의 품질, 해당 경험의 활용 방식 등과 무관하게 기타 변호사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지점입니다. 황지태 연구위원님의 연구가 향후 법정책적 대만을 제사하고자 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단순한 사건 수입 건수나 수입료 외에도 구체적인 법률대리의 행태(즉, 전관이 사건 수입부터 재판의 전(全)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며, 그것이 시장에서 책정되는 가격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인지 여부를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통칭하여 **사법에의 접근권(access to justice)**의 관점에서 비례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입증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유의미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등과 같이 최고위직 전관변호사의 누락을 연구의 한계로 언급하고 계신데, 이 같은 연구의 공백은 과거 일부 공개된 바 있는 국회의원실 자료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질적 연구로서 간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같은 조사도 진행하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S.23).

3. 현직 변호사 대상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현직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발표자께서는 ① 변호사시장에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 젊은, 비전관 출신 변호사의 출현이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며, ② 의뢰인들은 오히려 전관 변호사 선임을 선호하고, 퇴임으로부터 시점이 짧을수록 높은 비율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고 계십니다.(S.27, 28 및 34)

☞ 이에 관해서 단순히 여성 변호사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데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혹시 설문조사 문항 설계나 그 과정에서 이 같은 분석의 단초를 확인하신 것

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젊은’ 변호사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단지 연령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하에서 태생적으로 전관인 변호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인식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분석의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들이 경험한 전관예우 사건의 종류나 사건 유형 및 단계에 따른 전관예우 경험에 관한 설문응답들은(S.29, 30 및 31)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상당히 도전적인 연구결과라고 생각이 되며, 특히 전관에 대한 ‘예우’와 ‘비리’의 기준을 만들어 내는 판단의 척도가 마련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증적·경험적인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에서는 “전관예우 현상은 70년도 더 된 것으로, 언제까지 이 논의를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²⁾ 특히 변호사 수임료나 성공보수액, 소송의 전과정에서 개입되는 전관 출신 변호사의 구체적인 행위가 선임제 미제출, 전화 변론, 추가 로비 등과 같이 일부 알려진 것 이외에 어떤 양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상세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개업 후 일정 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단편적인 법정책만으로는 이 같은 현상이 근절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관 변호사, 의뢰인(전관 수임 경험 유무별), 변호사협회의 징계사례 등에 대하여 정성적인 평가(심층면접) 방식을 동원한 후속 연구가 추진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연구는 전관(변호사)가 탄생하는 시점부터 1년, 3년, 또는 그 이상의 시기를 정하여 주기적으로 추적조사 될 연구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계열적으로 법률가집단과 일반인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끊임없이 측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전관예우 해소를 위한 향후 법정책적 제언들

2018년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1.9%, 변호사의 경우 75.8%, 변호사 사무원의 경우 79.1%가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 한다”고 응답했으며,³⁾ 전관예우 심각성에 대해서 일반 국민 64%, 법조인 전체 69.7%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⁴⁾ 2019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의 경우 약 77.8

2)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에서 축사를 맡은 법원행정처장과 제2세션 발표자는 2018년 법원행정처의 “전관예우 실태 및 근절방안” 이 같은 취지로 전관예우가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 부분은 사법정책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심포지엄 자료집(2019년 6월 20일). 110면 이하

3) 법원행정처,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을 위한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4) 반면, 판사의 경우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다”고 답한 비율은 23.2%에 그쳤으며, 전관예우가 “없다”는 응답도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가 하면, 전관예우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판사들 경우, 23.8%만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수행한 바 있는 ‘대법관 출신변호사의 2016년도 수임 사건 전수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중 상위 10인이 약 70% 이상의 대법원 사건을 독점하여 대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 전관예우 현상이 매우 많거나(13.2%), 약간 있다(64.6%)고 응답하였고, **의뢰인의 95.1%** (매우 많다 56.7%, 약간 있다 38.4%)가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의 경우 선행 연구와 유사한 비율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입증된 반면, 후자의 경우 일반 국민 보다 사건 의뢰의 경험이 있는 의뢰인에 있어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저는 지난 4월, 전관예우 문제가 자칫 극소수의 ‘최고위직’(이었던) 법관과 검사 출신 변호사의 개업제한 문제에만 국한되어 논의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전관예우의 문제는, 사법적 책무(judicial accountability)의 관점에서 법률전문가 집단 스스로 자정력을 높이고, 법조윤리(legal ethics) 및 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보다 다양한 (출신의) 법관을 선출해야 한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응답 보다는 미국 연방의 ‘시니어판사’ 제도적 단면만을 소개하면서 법관 정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식의 접근을 시작한 법원의 태도를 극히 경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⁵⁾ 오늘 황지태 연구위원님의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전방위적인 노력만이 전관예우의 근절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짐작케 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첫째, 실태조사 대상으로서의 전관의 대상을 확대할 것과 ②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으로 말미암아 법관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전관(前官) 뿐만 아니라 소위 후관(後官)에 예우 현상이 발생할 것에 대한 사전적인 성찰 등의 관점이 추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 문제는 특정 집단을 비판하는 문제를 넘어 우리 근대 헌법상 사법 기능의 정립 과정에서 필요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실태조사는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이 같은 조사가 법률전문가 집단 스스로 법조윤리(legal ethics)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의 계기 속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자로서 몇 가지 우문(愚問)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였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지난 2019년 6월 20일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 전관예우의 개념과 범위(선행연구 정리)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예전의 관리를 예로써 정중히 대우함”이지만, 한국의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퇴직한 뒤 변호사 일을 하는 경우 현직의 판사나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을 의미함.⁶⁾

- ① 법조계 집단 내부의 관점에서 사법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연수원에서 동문수학하며 내부 엘리트 집단을 구성하여 온 집단이 공직 근무를 끝내고 이른바 변호사로 개업하여 ‘돌아온’ 동료에 대하여 적당한 경제적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응당 전관에 대한 예의로 인식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② 법조계의 직업윤리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에 의해서만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할 헌법 기구로서의 사법부가 개인적 인연을 바탕으로 재판결과나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부정한’ 특혜로도 이해함
- ③ 인간의 이익추구 관점에서 판사 또는 검사로 근무한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원하는 재판의 결과를 얻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높은 수임료를 받는 것이 정당화해 온 것으로도 파악됨⁷⁾

6) 은종환·정광호,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유형의 탐색: Q-Methodology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3권 제2호(2015), 241면. 전관예우에 대한 정의는 통상 논자에 따라 조금씩 달리 규정되어 왔음. 예를 들어 전관예우란, 고위공직자 일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어느 정도의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지휘·감독의 체계를 확보하고 있던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이후에 특정한 기업이나 혹은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소 등(‘로펌’)에 취업하여 퇴직 이전에 근무하던 행정청을 상대로 그들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 혹은 그에 대하여 주어지는 특혜성의 처우 일반을 포함하는 개념(한상희, 2011), 퇴직한 법관이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특별한 배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전관, 현관, 전관이용자의 삼위일체 합작품(이광수, 2016)이라거나 ‘사법절차(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포함)에서 판사·검사·헌법재판관·경찰관 등의 관련 공직에서 퇴직하여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변호사(이하 ‘전관변호사’라 칭함)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수사나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부당한 특혜를 받거나, 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현상’을 지칭(사법발전위원회, 연구용역 2018)한다고 각각 정의한 바 있다.

7) 은종환·정광호, 앞의 논문, 241-242면.

memo

memo

memo

memo



| 대한변호사협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주최 |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